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12. 18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7일
나. 발의자: 최봉희 의원 외 6명
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
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최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이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로 법률명이 변경되고 근거 조항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,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(안 제1조의2)
- 약칭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3조 및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상위법 제명 및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안 제1조의2에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.

○ 검토 결과

-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은 기부금품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동법 제2조를 개정(2024.1.30. 일부개정) 하였으며,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동법 제5조를 개정(2023.8.16. 일부개정) 하였음.
- 본 조례안에서는 위와 같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인용하고자 하는 조항의 번호가 변경되었기에, 이를 수정하여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여겨짐.
- 이와 더불어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을 통해 기부 문화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부 참여의 자발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봉희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---|-----|
| 의 번 호 | 632 |
|---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: 2025. 11. .

발 의 자: 최봉희·전승관·김지연
우경란·이성수·양송이
정선희 의원 (7인)

1. 제안이유

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이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로 법률명이 변경되고 근거 조항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,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(안 제1조의2)
- 다. 약칭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3조 및 제5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”을
“「기부금품의 모집 ·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6
항”으로 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
한다)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
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기부금
품의 모집 ·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제2조제1호”를
“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
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)”을 “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)”으로 한
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에 따른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기부금품의 모집 ·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6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기부금품”이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. 2. (생략) | <p>제1조의2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「기부금품의 모집 ·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----- 제2조제2호----- 2. (현행과 같음) |
| <p>제3조(기부증서의 발급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</p> | <p>제3조(기부증서의 발급) 구청장--</p> <p>-----</p> |

| | |
|---|---|
| <p><u>이라 한다</u>)은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기부심사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<u>시행령</u>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| <p>----- -----.</p> <p>제5조(기부심사위원회 설치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시행령</u>(이하 “시행령”----- ----- -----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|---|